# 소식 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3호

##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부적합 발생 시 시험 · 검사기관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시 제명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에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 대상 범위, 검사명령 절차 등 검사명령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험 · 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시험 · 검사기관에서 식약처장 및 영업자에게 보고토록 의무 명확화

###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7. 3 ~ 2017. 7. 24)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 강화 등 없음

# 소식 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0호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 1. 제정 이유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닭 · 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시 살충제 사용 및 잔류여부 확인 등 평가항목 명확화를 위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닭 · 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

– 당초 닭 · 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잔류 방지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 실제로 농장주가 동물 사육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뿐만아니라 살충제(농약) 사용 및 잔류여부 등 확인을 포함하여 평가항목을 명확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9. 19 ~ 2017. 10. 19)

2) 규제심사결과 : 비규제 확인(2017. 9. 13)

# 소식 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1호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식품과 축산물을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위생기준 마련(제4조)

1)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항목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

나. 현지실사 절차 등 개선(제5조)

1) 현지실사 계획 통보에 따른 회신 기한을 구체화

다. 현지실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항목을 위생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제6조)

1) 현지실사별(자체, 위탁/작업장별 등) 점검 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항목을 위생기준에 맞도록 세분화함

라. 현지실사 평가 판정기준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마련(제7조, 제8조)

1) 평가 점수별 판정기준을 정하고, 중요항목에 대한 판정방법을 마련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구체화

3) 현지실사결과 개선필요시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그 밖에 현지실사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조~제11조)

1) 실사 절차, 방법, 평가에 대해 국가 간 상호협의를 인정

2) 주문자부착식품등(OEM)의 위생점검 기준 및 주기를 정함

3) 위생평가기관의 현지실사 결과보고시 제출 자료 구체화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7-340호, 2017. 9. 18.(2017. 9. 18. ~ 2017. 10. 12.)

2) 규제심사 :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2017-2705호(규제, 2017. 9. 29)

나) 식약처 자체 규제심사(2017. 10. 18)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2017-494호(비중요, 2017. 10. 30)

# 소식 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3호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6조(재검토기한) 과 운영방식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신설 (안 제6조)

1) 재검토기한을 설정 및 운영방식 신설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7. 9. 29. ~ 2017. 10. 30.)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 강화 등 없음

# 소식 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4호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

### 1. 개정 이유

불량 달걀을 유통 · 판매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 · 유통기준을 신설하고,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안 제2. 7. 자, 제2. 7. 차]

1)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세척 및 보존 · 유통기준 마련 필요
2)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한 달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 · 유통하도록 규정 신설
3) 달걀의 세척방법과 보존 · 유통 온도를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안 제2. 7. 러]

1) 유통기간 산출기준의 합리적 설정 필요
2) 혼합 또는 단순처리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3)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4)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다.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3. 3. (3) (가), 제3. 3. (3) (다), 제3. 3. (3) (라)]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품의 제조 · 가공기준 개정 필요
2)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기준 개정 및 보관기준 신설
3)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 · 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4) 알가공품의 제조 ·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124호, 2017. 3. 13. ~ 2017. 4. 2.)

# 소식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 · 규격분과(2017. 4. 4.)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제2017-627호, 2017. 8. 18.)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7. 9. 5 ~ 2017. 9. 6.)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규제심사(2017. 9. 25 ~ 2017. 9. 29.)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제2017-477호: 원안의결, 2017. 10. 13.)

#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8호**

##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 · 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개정 고시

### 1. 개정 이유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 · 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제7조(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동 규정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변경 (안 제7조)

1) 재검토기한을 현재 특정일자 시점에서 주기적 재검토형으로 변경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기간(2017. 9. 12. ~ 2017. 10. 2.)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 확인

# 소식 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17.11.14.)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칙〈제2017-89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
2.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16.12.29), 식약처 고시 제2017-57호('17.6.30))으로 개정된 사항을 그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전에 미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에 따라 삭제, 통합, 재정비된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로 정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삭제, 통합, 재정비된 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 유형 변경 사항 반영
2) [별표 2] 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 목록 변경
3)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혼선 방지

나. 고시 편집체계 개편

1) 고시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로 정비
2)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기한 설정 영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 소식

3) 편집체계 개편으로 유통기한 설정 관련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

다.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시 지표 관련 문구 추가

1)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설정 시 지표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필요

2)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을 지표로 선정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3)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제시로 민원 이해 제고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7. 9. 29. ~ 2017. 10. 30(공고 제2017-368호, 2017. 9. 2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 2017. 11. 2.

3) 규제심사 : 국무총리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 (2017. 8. 17.)

# 소식 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0호

##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우수영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및 적용대상을 추가하여 우수영업자를 활성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우수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고시 내용에 맞도록 고시명을 변경

나. 우수수입업소 · 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을 확대하여 등록신청 요건을 완화(제3조)

다.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 마련(제5조)

라.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현지실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였던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선 등록가능(제5조)

마. 우수수입업소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갱신 신청 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우선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제7조)

바. 자체 위생관리 점검 결과보고서의 보고기준을 명확히 규정 →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제8조)

사.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

아. 우수수입업소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제품 포장지 등에 도안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제10조, 별표)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10. 13. ~ 2017. 11. 3.)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2017. 10. 23)

# 소식 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1호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고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조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6-80호, 2016.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2) 수박 등 5개 농산물 2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및 단감 등 31개 농산물 2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396호, 2017. 10. 10.(2017. 10. 10. ~ 2017. 10. 30)

2) 심의위원회

가) 2017. 6. 30.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 소식 1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등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 참고량'으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391호, 2017. 10. 24.)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3144호, 2017. 11. 3.)

# 소식 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3호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권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가. 소비자 및 영업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 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 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기준치'를 '영양성분기준치'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392호, 2017. 10. 24.)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3143호, 2017. 11. 3.)